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-29
----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법정동이 2개로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아현동 457의64번지, 아현동 457의69번지, 아현동 457의71번지, 아현동 457의78번지, 아현동 457의80번지, 아현동 457의81번지, 아현동 457의82번지, 아현동 457의93번지, 아현동 457의124번지, 아현동 650의60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함.(개정연혁표 7)

## 3. 개정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- 나. 「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

## 4. 개정조례 안 : 따로 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1. 3. 31 ~ 4. 20 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 (2011. 4. 28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(개정연혁표7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(개정연혁표7)

아현동 457의64번지, 아현동 457의69번지, 아현동 457의71번지, 아현동 457의78번지, 아현동 457의80번지, 아현동 457의81번지, 아현동 457의82번지, 아현동 457의93번지, 아현동 457의124번지, 아현동 650의60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(개정연혁표7) 아현동 457의64번지, 아현동 457의69번지, 아현동 457의71번지, 아현동 457의78번지, 아현동 457의80번지, 아현동 457의81번지, 아현동 457의82번지, 아현동 457의93번지, 아현동 457의124번지, 아현동 650의60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.